<bof>

1. [%1](#1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2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3 Calculation of corporate tax base and tax amount)[n]
   1. [1](#1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2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3 $(Calculation procedure for corporate tax base and tax amount))[n]

{1}텍스트, 스크린샷, 도표,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1. [%2](#1 과세표준의 계산)(#2 과세표준의 계산)(#3 Calculation of tax base)[n]
     1. [1](#1 $(과세표준의 계산))(#2 $(과세표준의 계산))(#3 $(Calculation of tax base))[n]

{1}텍스트, 폰트, 화이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2<n>}

* + 1. [2](#1 이월결손금)(#2 차기로 이월시키는 결손금)(#3 Carryforward of losses to future periods)[n]
       1. [3](#1 결손금의 정의)(#2 결손금의 정의)(#3 Definition of losses)[n]
          1. {1}(#1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2 각 사업연도의 세무상 비용인 손금총액이 세무상수익인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3 Losses for each fiscal yearare defined as the amount by which the total expenses deductible in each fiscal yearexceed the total tax base in that year.){e4<이때>}
       2. [4](#1 과세표준 계산 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2 과세표준 계산 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3 Carryforward losses deductible from each fiscal year's income in the calculation of tax base)[n]
          1. [5](#1 이월결손금의 범위)(#2 이월결손금의 범위)(#3 Scope of carryforward losses)[n]

{1}(#1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법§13).)(#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법§13).)(#3 The term "carryforward losses" refers to the losses incurred in fiscal years that commenced within 15 year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fiscal year (with losses incurred before December 31, 2019, in fiscal years that commenced within 10 years, and losses incurred before December 31, 2008, in fiscal years that commenced within 5 years). These are losses that exceed the total taxable income in fiscal years and are not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subsequent fiscal years (Law §13).){e(3<n>,6<이때>,7<n>,8<n>,9<n>,10<n>)}

* + - * 1. [6](#1 결손금의 범위)(#2 결손금의 범위)(#3 Scope of losses)[n]

{1}(#1 결손금은 법인세법§60에 따라 신고하거나 §66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2 결손금은 법인세법§60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66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3 Losses are only applicable to the tax base and tax amount for corporate tax purposes re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Tax Act §60 for each business year's income, or determined, adjusted, or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Tax Act §66.){e(3<n>,5<이때>,7<n>,8<n>,9<n>,10<n>)}

* + - * 1. [7](#1 결손금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2 결손금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3 When to apply loss provisions) [n]

{1}(#1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 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12.31.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2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 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12.31.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3 Effective from the first time a tax base is declared, determined, or adjusted on or after January 1, 2010. However, for losses that were not deducted in tax base declared, determined, or adjusted on or before December 31, 2009, the previous provisions apply.){e(3<n>,5<이때>,6<n>,8<n>,9<n>,10<n>)}

* + - * 1. [8](#1 $(공제대상 결손금의 범위))(#2 $(공제대상 결손금의 범위))(#3 $(Scope of deductible losses))[n]

{1}텍스트, 스크린샷, 라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3<n>,5<이때>,6<n>,7<n>,9<n>,10<n>)}

* + - * 1. [9](#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3 Deduction of carryforward losses covered by excess of stock issue par value) [n]

{1}(#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 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통칙 13-10…1).)(#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일지라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통칙 13-10…1).)(#3 Even if carryforward losses are covered by excess of stock issue par value, capital reduction gains, merger gains, or split gains, they are not considered deductible in the calculation of tax base for each business year.){e(3<n>,5<n>,6<n>,7<n>,8<n>,10<n>)}

* + - * 1. [10](#1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3 Carryforward losses that have not been deducted through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by the standard cost ratio and simple cost ratio estimation) [n]

{1}(#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법§68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법칙§4②).)(#2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추계결정 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인 경정함에 따라 법법§68 본문규정(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법칙§4②).)(#3 When there are errors in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corporate tax determined through estimated determination based on the standard cost ratio and simple cost ratio, due to discrepancies in the information reported by the taxpayer or determined by the tax authority, if the tax office head or the head of the local tax office rectifies such errors, carryforward losses that have not been de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68 (Special provisions for the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through estimation) will be included as deductible losses (Law §4②).){e(3<n>,5<n>,6<n>,7<n>,8<n>,9<n>)}

* + - 1. [11](#1 이월결손금의 공제)(#2 이월결손금의 공제)(#3 Deduction of carryforward losses)[n]
         1. [12](#1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3 Limitation on deduction of carryforward losses)[n]

{1}(#1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법법§13, 법법§91① 및 법령§10①). 그리고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2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내국법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법법§13, 법법§91① 및 법령§10①). 그리고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3 According to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6①, the deduction limit for carryforward losses for corporation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mpanies implementing recovery plans, as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s set at 100% of the taxable income. However, for domestic corpor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with the obligation to declare tax base, the carryforward loss deduction limit is 60% of the taxable income for each fiscal year (Law Article 13, Law Article 91①, and Decree 10①). Additionally, starting from fiscal years commencing in 2023, the carryforward loss deduction limit is increased to 80%.){e13<이 경우>}

* + - * 1. [13](#1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계산방법)(#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계산방법)(#3 Calculation method for the deduction limit of carryforward losses)[n]

[14](#1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2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마다 상이)(#3 The deduction limit for carryforward losses for general companies varies each fiscal year)[n]

[15](#1 2018년 귀속 사업연도)(#2 2018년 귀속 사업연도)(#3 2018 fiscal year)[n]

{1}(#1 2018년 귀속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70%를 공제한도로 합니다.)(#2 2018년 귀속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70%를 공제한도로 합니다.)(#3 2018 fiscal year has a deduction limit of 70% of the income for each fiscal year.){e(12<n>,16<n>,17<n>)}

[16](#1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사업연도)(#2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사업연도)(#3 Fiscal years from 2019 to 2022)[n]

{1}(#1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공제한도로 합니다.)(#2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공제한도로 합니다.)(#3 For fiscal years from 2019 to 2022, the deduction limit is 60% of the income for each fiscal year.){e(12<n>,15<n>,17<n>)}

[17](#1 2023년 귀속 사업연도)(#2 2023년 귀속 사업연도)(#3 2023 fiscal year)[n]

{1}(#1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2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3 Starting from fiscal years commencing in 2023, the deduction for carryforward losses is limited to 80% of the income for each fiscal year.) {e(12<n>,15<n>,16<n>)}

[18](#1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2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3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corpor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n]

[19](#1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2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3 Deduction limit for carryforward losses of SMEs and corpor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n]

{1}(#1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현행 유지)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2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현행 유지)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3 SMEs and corpor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an deduct carryforward losses up to 100% of the income for each fiscal year(current practice maintained).){e12<n>,e20<이 경우>}

[20](#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의 유형(법령§10①))(#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공제하는 법인의 유형(법령§10①))(#3 Types of corporations that can deduct 100% of income for each fiscal year without a carryforward loss deduction limit (Law §10(1)))[n]

[21](#1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2 회사를 되살리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3 Companies implementing business revival plans)[n]

{1}(#1 법원 인가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2 법원 인가결정에 의한 회사를 되살리려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3 Companies implementing business revival plans under court approval decisions){e19<n>}

[22](#1 기업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기업)(#2 부실해졌으나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 금융 기관들이 구체적인 협약에 따라 조건부로 협조 금융을 제공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회생을 꾀하는 기업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기업)(#3 Companies that have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but have potential for recovery and have received conditional financial assistance from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on specific agreements, managing separately to achieve business improvement plans)[n]

{1}(#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기업)(#2 시장 기능에 따라 기업의 구조 조정이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기업)(#3 Companies implementing business improvement plans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to ensure smooth and continuous corporate restructuring in line with market functions.) { e19<n>}

[23](#1 채권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2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3 Companies that have entered into agreements with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holding their debts to implement business normalization plans)[n]

{1}(#1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으로서 20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2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으로서 20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3 Companies implementing business normalization plans under agreements with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holding their debts or with public agencies engaged in financial and restructuring businesses, and applying from those reporting tax base after February 17, 2021.){ e19<n>}

[24](#1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2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유동화거래)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3 Special purpose corporations established for issuing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borrowing funds (liquidity transactions) based on bonds, real estate, or other property rights (liquid assets))[n]

{1}(#1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2 유동화전문회사 등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유동화거래)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유동화자산)을 매입한 법인)(#3 Special purpose corporation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ssuing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borrowing funds (liquidity transactions) based on bonds, real estate, or other property rights (liquid assets), by December 31, 2015, which has acquired bonds, real estate, or other property rights (liquid assets).) { e19<n>}

[25](#1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사실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명목회사)(#2 법인의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액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사실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명목회사)(#3 Nominal companies that effectively avoid corporate tax through dividend income deductions when distributing more than 90% of distributable profits to shareholders and others)[e19<n>]

{1}(#1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법법§51의2① 각 호 및 조특법§104의31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로서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2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법법§51의2① 각 호 및 조특법§104의31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로서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3 When a special purpose compan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sset liquidation distributes more than 90% of its distributable income as dividends, it is considered a nominal company that is effectively exempt from corporate tax through the payment dividend income deduction, as provided in Article 51-2①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104-31①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starting from the reporting of tax base from February 3, 2017, onwards.){e19<n>}

[26](#1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계획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3 Corporations approved for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under Article 10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n]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3 Corporations approved for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under Article 10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pplying from fiscal years commencing after January 1, 2020.){e19<n>}

* + - 1. [27](#1 결손금의 공제순서)(#2 결손금의 공제순서)(#3 Sequence of loss deductions)[n]
         1. {1}(#1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법령§10②).)(#2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법령§10②).)(#3 If losses occur in two or more fiscal years, deduct losses in the order of the year they occurred (Law §10(2)).){e3<n>,e4<n>}
      2. [28](#1 결손금소급공제)(#2 결손금소급공제)(#3 Loss carryback deduction) [n]
         1. [29](#1 결손금소급공제의 정의(법인세법§72①및조세특례제한법§8조의4))(#2 결손금소급공제의 정의(법인세법§72①및조세특례제한법§8조의4))(#3 Definition of loss carryback deduction (Corporate Tax Act §72① and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8-4))[n]

{1}(#1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이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SMEs can receive a refund of corporate tax up to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previous year through loss carryback deduction without carryforward loss deduction.){e30<이 경우에>}

* + - * 1. [30](#1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한 것으로 간주(법령§10③))(#2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한 것으로 간주(법령§10③))(#3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loss is deducted (Law §10③))[n]

{1}(#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3 The loss that is subject to refund under the loss carryback deduction is considered as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each fiscal year.){e29<이 경우에>}

* + - 1. [31](#1 자산수증익 등에 충당된 이월결손금)(#2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인 자산수증익 등에 충당된 이월결손금)(#3 Carryforward losses allocated to income such as asset appreciation from receiving cash or other property for free)[n]
         1. {1}(#1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법령§10③))(#2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인 자산수증익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인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법령§10③))(#3 Carryforward losses allocated to income such as asset appreciation from receiving cash or other property for free and allocated to debt exemption gains, which arise from the exemption or extinguishment of liabilities, are considered as deductions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Law §10③)){r28<n>}
      2. [32](#1 추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배제)(#2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배제)(#3 Exclusion of carryforward loss deduction in cases wher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re determined or assessed by estimation)[n]
         1. {1}(#1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법§68).)(#2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성실히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추계를 제외하고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법§68).)(#3 To encourage companies to maintain proper books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when determining or assessing corporate tax base by estimation, apart from natural disasters, carryforward losses cannot be deducted (Law §68).){e13<n>}
      3. [33](#1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2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3 Carryforward loss deduction limit for foreign corporations)[n]
         1. {1}(#1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법법§91①). 그리고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공제한도로 합니다.)(#2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법법§91①). 그리고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공제한도로 합니다.)(#3 The carryforward loss deduction limit for foreign corporations is set at 60% of income for each fiscal year, similar to domestic corporations (Law §91①). Starting from January 1, 2023, this limit increases to 80% of income for each fiscal year.){e12<n>,e13<이때>}
      4. [34](#1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2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3 Carryforward loss deduction for non-profit corporations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n]
         1. {1}(#1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 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법칙§4①).)(#2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 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법칙§4①).)(#3 Carryforward loss deduction for non-profit corporations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only includes carryforward losses arising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Law §4①).){e12<n>,e13<이때>}
      5. [35](#1 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2 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3 Carryforward loss deduction for the transferring corporation in a merger)[n]
         1. [36](#1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2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3 Method of carryforward loss deduction for the merger corporation, which continues to exist)[n]

{1}(#1 합병 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 사업 소득 제외)에서 공제합니다.))(#2 합병 시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 사업 소득 제외)에서 공제합니다.)(#3 Carryforward losses of the transferring corporation, which continues to exist, are deducted from the income amount of the merger corporation (excluding the inherited business income of the transferring corporation)){e12<n>,e13<이때>,e37<n>}

* + - * 1. [37](#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2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3 Carryforward loss deduction method for the transferring corporation that ceases to exist)[n]

{1}(#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2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3 Carryforward losses of the transferring corporation that ceases to exist are deducted under certain conditions from the income amount of the merger corporation.){e12<n>,e13<이때>,e36<n>}

* + - 1. [38](#1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2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3 Carryforward loss deduction for split corporations)[n]
         1. {1}(#1 분할신설법인 등이 적격분할의 요건(법법§46②)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단순 분할 또는 신설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신설되는 법인인 분할신설법인 등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법법§46②)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 In cases where a simple division or establishment division and merger occurs,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such as a split-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a qualified division under the tax laws (Article §46②) is entitled to apply for special taxation benefits. As a result, when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receives the assets of the split corporation at their book value,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can deduct the inherited deficit within the scope of the income amount generated from the inherited business of the split corporation.){e12<n>,e13<이때>}
      2. [39](#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법법§50의2, 법령§86의2))(#2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법법§50의2, 법령§86의2))(#3 Carryforward loss deduction when acquiring businesses (Law §50-2, Law §86-2))[n]
         1. [40](#1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3 Limitation on carryforward loss deduction when a corporation acquires another corporation's business)[n]

{1}(#1 법인이 법령§86의2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종전 사업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2 법인이 법령§86의2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종전 사업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3 If a corporation, under specific conditions outlined in Law §86-2, acquires another corporation's business, the carryforward losses related to the business under the control of the acquiring corporation are not deductible from the tax base of the acquired business unit on the date of the business acquisition.){e12<n>,e13<n>,e41<이때>}

* + - * 1. [41](#1 법령§86의2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특정 요건)(#2 법령§86의2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특정 요건)(#3 Specific conditions where carryforward loss deduction is limited for business acquisitions under Law §86-2)[n]

[42](#1 사업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70%이상일 것)(#2 사업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70%이상일 것)(#3 The assets of the acquired corporation must be more than 70% of the transferring corporation's total assets)[n]

{1}(#1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 총액의 70%이상인 경우.)(#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 총액의 70%이상인 경우.)(#3 In cases where a corporation acquires another corporation's business, and the assets acquired are more than 70% of the total assets of the transferring corporation as of the business acquisition date.){e40<이때>,e43<n>,e44<n>}

[43](#1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이상에 해당할 것)(#2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이상에 해당할 것)(#3 The acquired assets must be more than 90% of the transferring corporation's total assets minus liabilities)[n]

{1}(#1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이상인 경우.)(#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이상인 경우.)(#3 In cases where a corporation acquires another corporation's business, and the acquired assets are more than 90% of the transferring corporation's total assets minus liabilities.){e40<이때>,e42<n>,e44<n>}

[44](#1 양도･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해당할 것)(#2 양도･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해당할 것)(#3 The corporation must fall under the category of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transferor or transferee)[n]

{1}(#1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양수인이 법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등이 있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3 In cases where a corporation acquires the business of another corporation and as of the date of the transfer agreement, there exists a special relationship such as a family relationship, economic affiliation, or management contro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or.){e40<이때>,e42<n>,e43<n>}

* + 1. [45](#1 비과세소득)(#2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3 Non-taxable income)[n]
       1. [46](#1 비과세소득의 범위)(#2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3 Scope of non-taxable income)[n]
          1. [47](#1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의 유형)(#2 법인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유형)(#3 Types of non-taxable inco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n]

[48](#1 신탁재산의 소득)(#2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인 신탁재산의 소득)(#3 Income from trust property, which is property that the trustee can receive and manage on behalf of the grantor)[n]

{1}(#1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법§51))(#2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임(법법§51))(#3 Income generated from the trust property of public interest trust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ublic projects is considered non-taxable income (Law §51).){e49<n>,e50<n>}

[49](#1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2 국민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3 Interest on savings in National Savings Cooperatives established to encourage savings by citizens and promote their economic stability)[n]

{1}(#1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2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3 Interest incurred before December 31, 1990 on savings in National Savings Cooperatives established to encourage savings by citizens and promote their economic stability) {e48<n>,e50<n>}

[50](#1 1983.1.1.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2 1983.1.1.전에 발행한 주요 산업의 부흥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3 Interest and discounts on industrial revival bonds issued for raising funds necessary for the revival and economic reconstruction of major industries issued before January 1, 1983)[n]

{1}(#1 1983.1.1.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 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 주택은행의 것은 1982.1.1.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2 1983.1.1.전에 발행한 주요 산업의 부흥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산업부흥채권, 정부가 군사상 목적으로 징발한 토지와 물자 등 재산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인 징발보상채권, 통신시설 확장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 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 주택은행의 것은 1982.1.1.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3 Interest and discounts on industrial revival bonds issued for raising funds necessary for the revival and economic reconstruction of major industries issued before January 1, 1983, bonds issued for compensating property such as land and materials requisitioned by the government for military purposes, bonds issued by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for raising funds for expanding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subway bonds, road bonds, waterworks bonds, land development bonds, and national housing bonds (excluding those issued by the Korea Housing Corporation after January 1, 1982) (Article 12 of Supplementary Provisions, Law No. 5581, December 28, 1998).){e48<n>,e49<n>}

* + - * 1. [51](#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2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3 Non-taxable income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52](#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은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3 Tax exemptio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13) on gains obtained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f financial companies, such as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that invest in newly establish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in need of capital)[n]

[5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의의)(#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은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의의)(#3 Significance of tax exemption on gains obtained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f financial companies, such as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that invest in newly establish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in need of capital)[n]

{1}(#1 조특법§13①의 법 소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출자로 인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 조특법§13①의 법 소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인 양도차익 및 출자로 인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3 Gains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r equity stakes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13①),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amount and the acquisition amount, and dividend income received as a result of investment, are not subject to corporate tax.){e54<이 경우에>}

[54](#1 조특법§13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조특법§13에서 규정한 과세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3 Shares or equity stakes specified by law as non-taxable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13)[n]

[55](#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when they invest in newly establish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by providing capital)[n]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3 Shares or equity stak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when they invest in newly establish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by providing capital){e53<이 경우에>}

[56](#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technology business finance companies through investments in technology businesses or similar entities)[n]

{1}(#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 신용 보증 기금법’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3 Shares or equity stakes acquired by technology business finance companies through investments in technology businesses, venture enterprises, or companies primarily engaged in commercializing technology held by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and promoting startups through such technology){e53<이 경우에>}

[57](#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or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nvestment Cooperatives, which invest in entrepreneurs and venture enterprises, distribute profits, and dissolve after investment)[n]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무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인 신기술창업전무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3 Shares or equity stak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startup planners, technology business finance companies, or venture capital investment limited companies through investments in entrepreneurs, technology businesses, venture enterprises, or companies primarily engaged in commercializing technology held by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and promoting startups through such technology, and distribute profits through cooperative-style investment entities) { e53<이 경우에>}

[58](#1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a fund management corporation established by law, through investment in entrepreneurs and others via an investment cooperative, which is a cooperative-style investment institution that invests in entrepreneurs and venture enterprises, distributes returns to members, and dissolves after investment)[n]

{1}(#1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3 Shares acquired by a fund management corporation established by law, through investment in entrepreneurs, technology businesses, venture enterprises, and technology startup specialist companies via an investment cooperative, which is a cooperative-style investment institution that invests in entrepreneurs and venture enterprises, distributes returns to members, and dissolves after investment) { e53<이 경우에>}

[59](#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when they inves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listed on the KONEX market, which is a dedicated stock market for startups in their early stages, to facilitate their access to capital through the stock market)[n]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 기업에 출자(2014.1.1. 이후 출자분부터)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 기업에 출자(2014.1.1. 이후 출자분부터)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3 Shares or equity stak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or high-tech business financial companies by invest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which is a stock market exclusivel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esigned to facilitate their access to capital (from January 1, 2014, onwards)) { e53<이 경우에>}

[6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 초기의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or equity stak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by investing in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through investment cooperatives to facilitate the acc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venture companies to capital markets)[n]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3 Shares or equity stak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venture capital investment companies, or high-tech business financial companies by investing in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through investment cooperatives){ e53<이 경우에>}

[6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의4))(#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의4))(#3 Tax exemptio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13-4) on gains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f companies specializing in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obtained by financial companies such as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that invest in newly establish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in need of capital)[n]

[62](#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의의)(#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의의)(#3 Significance of tax exemption on gains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f companies specializing in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obtained by financial companies such as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that invest in newly establish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in need of capital)[n]

{1}(#1 조특법§13의4의 법 소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 조특법§13의4의 법 소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3 No corporate tax is imposed on the gains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r equity stakes as stipulated by law, and on dividends received from investment companies,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r equity stakes under Article 13-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e63<이 경우에>}

[63](#1 조특법§13의4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2 조특법§13의4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3 Non-taxable shares or stakes as stipulated in Article 13-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64](#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by invest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lated to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n]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startup planners, or high-tech business financial companies by invest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lated to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as def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by December 31, 2022){e62<이 경우에>}

[65](#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through investment cooperatives)[n]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startup planners, or venture capital investment companies through investment cooperatives, except for the parts specified in Article 13, Paragraph 1, Item 3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62<이 경우에>}

[66](#1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s which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law to manage and operate funds through investment cooperatives)[n]

{1}(#1 기금운용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후 성과를 조합원에게 하는 배분하고 해산하는 조합형태의 투자기관인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3 Shares acquired by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s which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law to manage and operate funds through investment cooperatives){ e62<이 경우에>}

* + - 1. [67](#1 비과세소득 등의 공제)(#2 비과세소득 등의 공제)(#3 Deductions for non-taxable income)[n]
         1. {1}(#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13①(2)의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13①(3)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법칙§5).)(#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13①(2)의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13①(3)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법칙§5).)(#3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if the sum of non-taxable income under Article 13①(2)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deduction amount for income under Article 13①(3) of the Corporate Tax Act exceeds the remaining amount after deducting carryover losses from the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the excess amount is considered non-existent (Article 5).){r4<n>}
    1. [68](#1 소득공제)(#2 소득공제)(#3 Deduction of income)[n]
       1. [69](#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법§51의2, 법령§86의2, 조특법§104의31, 조특령§104의28))(#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법§51의2, 법령§86의2, 조특법§104의31, 조특령§104의28))(#3 Income deduction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uch as liquidity specialized companies that acquire assets like non-performing loans and la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 (Article 51-2, Article 86-2,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104-31,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nforcement Decree Article 104-28))[n]
          1. [70](#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법인)(#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법인)(#3 Corporations eligible for income deduction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like liquidity specialized companies that acquire assets like non-performing loans and la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n]

[71](#1 유동화전문회사)(#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3 Liquidity specialized companies, which are special purpose companies that acquire assets like non-performing loans and la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n]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3 Specialized companies for asset liquidity, as defined by the Asset Liquidity Act) {e79<n>,e85<n>}

[7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3 Investment companies, etc.,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n]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 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및 투자 유한 책임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 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및 투자 유한 책임회사)(#3 Investment companies, investment purpose companies, limited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ment joint-stock companies (excluding management participation-type private equity investment ent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e79<n>,e85<n>}

[73](#1 법 소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법 소정 약정 체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 체결 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 체결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3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a company that operates its assets through methods such as investing in companies with agreed contracts or purchasing agreed contract assets, with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management of companies with agreed contracts,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to shareholders)[n]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 체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 체결 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 체결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3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a company that operates its assets through methods such as investing in companies with agreed contracts or purchasing agreed contract assets, with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management of companies with agreed contracts,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to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 e79<n>,e85<n>}

[74](#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투자 운용을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3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refers to a company that invests in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nd entrusts the investment management to an asset management company)[n]

{1}(#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 투자 회사)(#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투자 운용을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3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nd investment companies refer to companies that invest in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nd entrust the investment management to an asset management company.) { e79<n>,e85<n>}

[75](#1 법 소정 선박투자회사)(#2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법 소정 선박투자회사)(#3 Ship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ships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to shareholders as specified by law)[n]

{1}(#1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선박투자회사)(#2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선박투자회사)(#3 Ship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ships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to shareholders) { e79<n>,e85<n>}

[76](#1 법 소정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2 법 소정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3 Special purpose compani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lease operations as specified by law)[n]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3 Special purpose compani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lease operations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 e79<n>,e85<n>}

[77](#1 법 소정 문화산업전문회사)(#2 법 소정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인 문화산업전문회사)(#3 Culture industry specialized companies that operate in specific cultural industry businesses as defined by law and distribute their profits to investors, employees, and shareholders)[n]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인 문화산업전문회사)(#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인 문화산업전문회사)(#3 Culture industry specialized companies that operate in specific cultural industry businesses as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distribute their profits to investors, employees, and shareholders) { e79<n>,e85<n>}

[78](#1 법 소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 법 소정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3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ies, which are companie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investing their assets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to shareholders as specified by law)[n]

{1}(#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3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ies, which are companie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investing their assets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ct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to shareholders){ e79<n>,e85<n>}

* + - * 1. [79](#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3 Income deduction amount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uch as liquidity specialized companies, which acquire assets like non-performing loans and la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n]

[80](#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3 Calculation method for the income deduction amount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uch as liquidity specialized companies, which acquire assets like non-performing loans and la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n]

{1}(#1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2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3 When distributing more than 90% of the distributable profi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dividend amount is deductible within the income range.){e70<n>,e81<n>,e82<n>,e85<n>}

[81](#1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법령§86의3①))(#2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법령§86의3①))(#3 Calculation method for distributable profits (Article 86-3①))[n]

{1}(#1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2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3 Distributable profits is calculated as follows: Current net profit + Carried-over surplus + Carried-over loss - Reserve for profits){ e70<n>,e80<n>,e82<n>,e85<n>}

[82](#1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고려할 사항)(#2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고려할 사항)(#3 Considerations when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s)[n]

[83](#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2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3 Reduction of received dividends by decreasing capital reserve funds derived from capital transactions) [n]

{1}(#1 당기순이익 등에는  [「상법」 제461조의2](https://www.lawnb.com/Info/ContentVi%7b%7de%7b2%7dw?sid=L000001702_461X2_20221231)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지만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당기순이익 등에 포함합니다.(법법§18(8),법법§16①(2)))(#2 당기순이익 등에는  [「상법」 제461조의2](https://www.lawnb.com/Info/ContentVi%7b%7de%7b2%7dw?sid=L000001702_461X2_20221231)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지만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한 금액이 장부 가격보다 많아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당기순이익 등에 포함합니다.(법법§18(8),법법§16①(2)))(#3 In the case of current net profit, dividends received by reducing the capital reserve under Article 461-2 of the Commercial Act are excluded. However, dividends on capital reserves not considered as revaluation reserve, which are created because the capital reserv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revaluation amount under the Assets Revaluation Act exceed the book value, are included in current net profit (Law Article 18(8), Law Article 16①(2)).){e70<n>,e80<n>,e81<n>,e84<n>,e85<n>}

[84](#1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2 유가 증권의 가격이 취득 가격보다 자산 가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경우의 차액인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집합투자자산을 평가하여 발생하는 손익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3 Marketable securities valuation gains/losses which refer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of securities and the acquisition price, when the asset value of marketable securities has increased or decreased, and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valuation gains/losses which refer to the profit or loss arising from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assets)[n]

{1}(#1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하지만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포함합니다.(법령§73(2), 법령§75③(2), 법령§86의3①(2)))(#2 유가 증권의 가격이 취득 가격보다 자산 가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경우의 차액인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하지만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포함합니다.(법령§73(2), 법령§75③(2), 법령§86의3①(2)))(#3 Marketable securities valuation gains/losses which refer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of securities and the acquisition price, when the asset value of marketable securities has increased or decreased, are included, bu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valuation gains/loss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refer to the profit or loss arising from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assets, are excluded.){ e70<n>,e80<n>,e81<n>,e83<n>,e85<n>}

* + - * 1. [85](#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대상(법법§51의2②))(#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대상(법법§51의2②))(#3 Exemption from income deduction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uch as liquidity specialized companies, which acquire assets like non-performing loans and la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 (Article 51-2②))[n]

[86](#1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2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3 Dividends exempted from income tax or corporate tax)[n]

{1}(#1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2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3 Dividends exempted from income tax or corporate tax under the Corporate Tax Act o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70<n>,e79<n>,e87<n>}

[87](#1 배당지급법인이 법 소정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2 배당지급법인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한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법 소정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3 Dividend paying corporations established through receiving investments from specific third parties without going public)[n]

{1}(#1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개인 등(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2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개인 등(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공개로 소수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3 Dividend paying corporations established through receiving investments from private individuals or similar (2 or fewer individuals, or 1 individual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where such private investors collectively own 95% or more of the total issued shares.){e70<n>,e79<n>,e86<n>}

* + - * 1. [88](#1 통칙 및 예규)(#2 통칙 및 예규)(#3 General provisions and established rules)[n]

[89](#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1))(#2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이나 토지 따위의 자산을 모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1))(#3 Income deduction for temporary special purpose companies, such as liquidity specialized companies, established to gather financial institutions' non-performing loans, land, and similar asset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 (General Provisions 51-2-86-2...1))[n]

[90](#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기)(#2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이나 토지 따위의 자산을 모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기)(#3 When to apply income deduction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uch as liquidation-specialized companies established temporarily to collect financial institution's bad debts or real estate asset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n]

{1}(#1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함.)(#2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함.)(#3 The income deduction under Article 51-2 of the law is applied to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surplus fund disposition resolution for the relevant dividend is made.){r70<n>,r79<n>,r85<n>}

[91](#1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시 배당의 범위)(#2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시 배당의 범위)(#3 Scope of dividends when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s)[n]

{1}(#1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2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의 주는 배당과 주식으로 주는 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3 In the context of Article 51-2①, stating that "90% or more of the distributable profits should be distributed", "dividends" include both cash dividends and stock dividends.) {e79<n>}

[92](#1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2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3 When the income from the valuation gain on tangible assets is excluded from distributable profits, and as a result, the dividend amount falls short of 90% of the distributable profits)[n]

{1}(#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법인-21860, 2015.2.9.))(#2 기업구조조정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법인-21860, 2015.2.9.))(#3 In the case of a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that, under Article 462① of the Commercial Act, excludes the amount equivalent to income from the valuation gain on tangible assets from distributable profits and, as a result, the dividend amount falls short of 90% of the distributable profits, the income deduction under the same law cannot be applied (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21860, February 9, 2015).) {e79<n>}

[93](#1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2))(#2 영업 활동을 중지하고 법인격을 잃는 상태인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2))(#3 Income deduction for dissolved investment companies in a state of discontinuing business operations and losing corporate status (General Rule 51-2-86-2...2))[n]

{1}(#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를 적용함)(#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맡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를 적용함)(#3 Even in the case of interest income generated when an investment company under the Act On Business O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entrusts assets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others during the liquidation period as specified in Article 79⑥ of the law, Article 51-2 of the law shall apply.){r70<n>,r79<n>,r85<n>}

[94](#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3 Requirements for income deduction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uch as liquidation-specialized companies that receive distressed assets such as non-performing liabilities and la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n]

{1} (#1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서면-2021-법인-4604, 2021.8.27.))(#2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서면-2021-법인-4604, 2021.8.27.))(#3 When a ship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ships and distributing profits to shareholders, distributes 90% or more of distributable profits in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ividend is resolved, income deduction can be applied to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dividend is resolved (Written Opinion-2021-Corporate-4604, August 27, 2021).){r70<n>,r79<n>,r85<n>}

[95](#1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마음대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3 Whether a special purpose company such as a liquidation-specialized company, which is established to collect financial institutions' distressed assets like non-performing liabilities and land and issue and sell securities, can change the fiscal year as desired and apply dividend income deduction)[n]

{1}(#1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2019.9.26.))(#2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2019.9.26.))(#3 To change the fiscal yearto "from the fiscal year commencement date to the date of receiving the balance of real estate sales," it must be repor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①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ny amount exceeding distributable profits due to the recognition timing difference of rental income and expenses in the case of a consignment managemen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is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the fiscal year (Preliminary-2019-Legal Interpretation Cororate.-0241, September 26, 2019).) {r70<n>,r79<n>,r85<n>}

[96](#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3 Whether the amount not included in gross income arising from differences in timing of recognizing rental income and expenses is included in distributable profits of a special purpose company such as a liquidation-specialized company, which collects financial institution's distressed assets like bad debts and land and issues securities) [n]

{1}(#1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 2018.3.8.))(#2 출자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 2018.3.8.))(#3 The amount adjusted for tax purposes due to the difference in timing of recognizing rental income and expenses, resulting in unrealized gains, is not deducted from distributable earnings by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that assumes responsibility only up to the amount of its capital contribution (Preliminary-2018-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060, March 8, 2018).) {e79<n>}

[97](#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3 Whether dividends received by a special purpose company such as a liquidation-specialized company, which collects financial institution's distressed assets like non-performing liabilites and land and issues securities, after reducing the capital reserve are included) [n]

{1}(#1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사전-2015- 법령해석법인-0215, 2016.2.4.))(#2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사전-2015- 법령해석법인-0215, 2016.2.4.))(#3 When a special purpose company such as a liquidation-specialized company, which collects financial institution's distressed assets like non-performing liabilities and land and issues securities, receives dividends by reducing the capital reserve, the amount is not included in the "distributable profits" under Article 86-2①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eliminary-2015-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215, February 4, 2016).){ e79<n>}

* + - 1. [98](#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3 Income deduction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1. [98x1](#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3 $(Income deduction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 * 1. [99](#1 통칙 및 예규)(#2 통칙 및 예규)(#3 General provisions and established rules)[n]

[100](#1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명목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3 In cases where a nominal company, such as a Project Finance Investment Company (PFV), jointly conducts a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with a substantive company, a housing construction corporation, to efficiently execute a project)[n]

{1}(#1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2-법인-4712, 2022.12.6.))(#2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2-법인-4712, 2022.12.6.))(#3 When a nominal company, PFV, jointly conducts a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with a substantive company, a housing construction corporation, to efficiently execute a project, it is consider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4-31(1)(1)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if other conditions are satisfied (Written Opinion-2022-Corporate-4712, December 6, 2022).){e98<n>}

[101](#1 PFV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2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명목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3 The requirements for a nominal company, known as a Project Finance Investment Company (PFV), to qualify for income deductions under Article 104-31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for efficient project execution)[n]

{1}(#1 PFV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서면-2021-법인-5870, 2022.4.27.))(#2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명목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서면-2021-법인-5870, 2022.4.27.))(#3 In order for a nominal company known as a Project Finance Investment Company (PFV) to qualify for income deductions under Article 104-31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for efficient project execution, it must meet the requirement stipulated in the same law's Enforcement Decree Article 104-28④ which entails entrusting fund management tasks to a fund management outsourcing company. Additionally, it's necessary for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the fund management outsourcing company to have different owners.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depends on factors such as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the scope of the tasks performed (Written Opinion-2021-Corporate-5870, April 27, 2022).){e98<n>}

* + 1. [102](#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특법§104의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2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특법§104의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3 Special tax calculation for maritime transport companies (Article 104-10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pplicable from the first fiscal year after January 1, 2005))[n]
       1. [103] (#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대상법인)(#2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대상법인)(#3 Corporations subject to special tax calculation for maritime transport companies)[n]
          1. {1}(#1 내국법인 중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등을 영위하는 기업(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 2024. 12.31.까지 적용))(#2 내국법인 중 ｢해운법｣ 상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항구와 외국 항구 사이 또는 외국 항구와 외국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해상 운송 사업인 외항운송사업(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등을 영위하는 기업(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 2024. 12.31.까지 적용))(#3 Among domestic corporations, corporations engaged in overseas shipping businesses under the Marine Transporation Act (excluding seafood transport operators) that regularly or irregularly operate ship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rts or between foreign ports, and whose annual combined tonnage of benchmark ships does not exceed five times the annual operating tonnage (applied until December 31, 2024).){e104<이때>}
       2. [104](#1 외항운송사업의 정의)(#2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항구와 외국 항구 사이 또는 외국 항구와 외국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해상 운송 사업인 외항운송사업의 정의)(#3 Definition of overseas shipping businesses, which are maritime transport businesses that regularly or irregularly operate ship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rts or between foreign ports)[T,e104<n>]
          1. {1}(#1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2 =외항 정기적･부정기적 여객운송사업)(#3 =Overseas regular or irregular passenger transport business){n}
          2. {2}(#1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송사업 제외))(#2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송사업 제외))(#3 =Overseas regular or irregular cargo transport business (excluding seafood transport business)){n}
          3. {3}(#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3 =International transit cruise ship operation business under the Cruise Industry Development And Support Act){n}
       3. [105](#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내용)(#2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내용)(#3 Special provisions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maritime transport companies)[n]
          1. {1}(#1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2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3 Corporate tax base can be calculated as the sum of maritime income and non-maritime income, unlike regular corporations.){e106<n>}
       4. [106](#1 해운소득의 과세표준)(#2 해상운송을 통한 과세소득의 과세표준)(#3 Tax base for income generated from maritime transport)[n]
          1. [107](#1 해운소득의 정의)(#2 해운소득의 정의)(#3 Definition of maritime transport income)[n]

{1}(#1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2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3 Total amount of standard profit of individual ships){e105<n>,e108<n>}

* + - * 1. [108](#1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방법)(#2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방법)(#3 Method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profit of individual ships)[n]

{1}(#1 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2 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3 Individual ship net tonnage × earnings per day per ton × operating days × utilization rate){e105<n>,e107<n>,e109<n>,e110<n>}

* + - * 1. [109](#1 1톤당 1운항일이익)(#2 1톤당 1운항일이익)(#3 Eearnings per day per ton)[T,e108<n>]

{1}(#1 =1천톤이하 14원)(#2 =1천톤이하 14원)(#3 =Up to 1,000 tons: KRW 14){n}

{2}(#1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2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3 =Over 1,000 tons, up to 10,000 tons: KRW 11){n}

{3}(#1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2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3 =Over 10,000 tons, up to 25,000 tons: KRW 7){n}

{4}(#1 =2만5천톤초과 4원)(#2 =2만5천톤초과 4원)(#3 =Over 25,000 tons: KRW 4){n}

* + - * 1. [110](#1 사용률의 계산방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4조의7③(4)))(#2 사용률의 계산방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4조의7③(4)))(#3 Method for calculating utilization rate (Article 104-7③(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111](#1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 전체를 용선한 경우)(#2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 전체를 이용한 경우)(#3 When the specially applied company owns or charters the entire vessel)[n]

{1}(#1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 전체를 용선한 경우에는 100%를 사용률로 합니다.)(#2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 전체를 용선한 경우에는 100%를 사용률로 합니다.)(#3 When the specially applied company owns or charters the entire vessel, 100% utilization rate applies.){e108<n>,e112<n>}

[112](#1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의 일부를 용선한 경우)(#2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3 When the specially applied company uses only part of the vessel)[n]

{1}(#1 해당 선박의 최대 적재량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특례적용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선박 건조 시 설계서에 명시된 적재능력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수를 말한다)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2.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2 해당 선박의 최대 적재량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특례적용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선박 건조 시 설계서에 명시된 적재능력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수를 말한다)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2.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3 The ratio of the cargo loaded by a specially applied company on a particular vessel to the vessel's maximum loading capacity. However, in cases where a specially applied company uses container quantity as the criterion for chartering, the ratio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containers loaded by the specially applied company on the vessel, as a percentage of the maximum container capacity that can be loaded on the vessel (which corresponds to 75% of the loading capacity specified in the vessel's construction plans when it was built). (Applies to declarations submitted on or after February 15, 2022).){e108<n>,e111<n>}

* + - 1. [113](#1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2 해상운송이 아닌 소득의 과세표준)(#3 Tax base for income other than maritime transport income)[n]
         1. {1}(#1 법인세법§13부터 §5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해운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2 법인세법§13부터 §5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상운송이 아닌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3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from Article 13 to Article 54 is the corporate tax base for income other than maritime transport.){e105<n>,e106<n>}
      2. [114](#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특례의 의무적용기간)(#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특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3 Mandatory period for applying the special tax base for maritime companies)[n]
         1. {1}(#1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3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exception that calculates the corporate tax base as the sum of maritime income and non-maritime income, unlike regular corporations, must be continuously applied for five fiscal years once chosen, and carryover losses incurred before applying the tax base calculation exception cannot be deducted.){r119<n>}
      3. [115](#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기타사항)(#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기타사항)(#3 Other details of the tax base calculation exception for maritime companies)[n]
         1. [116](#1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2 해상운송이 아닌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3 Losses incurred from income other than maritime transport income)[n]

{1}(#1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2 해상운송이 아닌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3 Losses incurred from income other than maritime transport income cannot be offset against standard profits of individual ships.){e106<n>}

* + - * 1. [117](#1 비과세･세액 감면･세액 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2 비과세･세액 감면･세액 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3 Exclusion of tax exemptions, tax reductions, tax deductions, and income deduction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s) [n]

{1}(#1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국세기본법, 조약 등에 의한 비과세･세액 감면･세액 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2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국세기본법, 조약 등에 의한 비과세･세액 감면･세액 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3 Exclusion of tax exemptions, tax reductions, tax deductions, and income deduction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s for maritime transport income) {n}

* + - * 1. [118](#1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3 Withholding tax on maritime transport income)[n]

{1}(#1 해운소득에 원천징수 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2 해운소득에 원천징수 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3 Withholding tax on income included in maritime transport income cannot be deducted as prepayment tax.){r106<n>}

* + - * 1. [119](#1 특례요건의 위반 시 제재)(#2 특례요건의 위반 시 제재)(#3 Sanctions for violating special conditions)[n]

{1}(#1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 중 특례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불가)(#2 1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 중 특례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불가)(#3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exemption, if the special conditions are violated for two fiscal years or more, from the second violation fiscal year onwards, the special conditions application is not allowed for the remaining period and the next five fiscal years.){r114<n>}

* + - * 1. [120](#1 법인세법§63의2①(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의 방법으로 중간예납 시 해운소득의 계산방법)(#2 법인세법§63의2①(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의 방법으로 중간예납 시 해운소득의 계산방법)(#3 The method for calculating maritime transport income when making interim prepayments in accordance with Corporate Tax Act Article 63-2①(2) (based on the corporate tax amount for the applicable interim prepayment period))[n]

{1}(#1 법인세법§63의2①(2)의 자기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톤세 적용기간 첫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63의2①(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톤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계산 할 수 없습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25.2005.07.22))(#2 법인세법§63의2①(2)의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톤세 적용기간 첫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63의2①(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에 의해 전년도 귀속분 법인세 납부액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톤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계산 할 수 없습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25.2005.07.22))(#3 Even when making interim prepayments through self-assessment based on the actual business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Corporate Tax Act Article 63-2①(2), maritime transport income is calculated as the total of individual ship standard profits. However, in the first year of tonnage tax application, when calculating the interim prepayment tax amount as 50% of the corporate tax paid for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Corporate Tax Act Article 63-2①(2) (based on the corporate tax amount for the applicable interim prepayment period), the tonnage tax provisions cannot be self-assesse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525, July 22, 2005).){n}

* + - 1. [121](#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예규)(#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예규)(#3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rules for maritime companies)[n]
         1. [122](#1 해운기업의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2 해운기업의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3 Gain or loss from the sale of long-term cargo transport contracts of maritime companies) [n]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장기화물운송계약과 관련된 선박이 침몰되어 해당 장기화물운송 계약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의 침몰과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는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내용, 대체 선박의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서면-2020-법인-3493, 2021.05.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3개월 이상 장기화물운송계약과 관련된 선박이 침몰되어 해당 장기화물운송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의 침몰과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는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내용, 대체 선박의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서면-2020-법인-3493, 2021.05.21.))(#3 When a maritime company benefiting from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under Article 104-10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cannot maintain a long-term cargo transport contract for three months or more due to the sinking of a ship related to the contract and subsequently sells the contract, the gain or loss from the sale of the contract is considered maritime transport incom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acquisition, maintenance, management, and disposal of ships under Article 104-7(2)(2)(d)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Whether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sinking of the ship and the sale of the long-term cargo transport contract is determined based on the actual content,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he contract's terms and the possibility of securing alternative ships. (Written Opinion-2020-Corporate-3493, 2021.05.21)) {e106<n>}

* + - * 1. [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 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 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3 When a specially applied company benefiting from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under Article 104-10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violates the special conditions for two or more fiscal years)[n]

[124](#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용 제한)(#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시 적용함을 제한)(#3 Limitation on reapplying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for maritime companies in case of violating the special conditions)[n]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 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임)(#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 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임)(#3 When a specially applied company benefiting from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under Article 104-10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violates the special conditions for two or more fiscal years, it cannot apply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application and the following five fiscal years from the fiscal year of the second violation, and cannot apply for special tax base forfeiture when reporting the tax base for the fiscal year of the second violation. (Written Opinion-2017-Corporate-0728, 2017.11.29.)) {e114<n>,e126<n>}

[126](#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적용방법)(#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적용방법)(#3 Application method of Article 14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in case of violating the special conditions for the tax base calculation exception for maritime companies)[n]

{1}(#1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 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 2017.11.29.))(#2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 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 2017.11.29.))(#3 When the company submits the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60(2) of the Corporate Tax Act, such as tax adjustment calculation statements, along with the report under the same Article before the deadline for reporting the tax base for the first fiscal year of the tonnage tax application period when calculating intermediate prepayment based on the method under Article 63-2(1)(2)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tonnage tax regulations are considered to be continuously applied during the remaining period of the special application period. However, this is limited to matters related to income that is not maritime income according to Article 104-7(8)(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Written Opinion-2017-Corporate-0728, 2017.11.29.)){e114<n>,e124<n>}

* + - * 1. [127](#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세무상 유보금액)(#3 Accumulated tax-deferred reserves that remain within the company due to the fixed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that are not repatriated and do not leave the company regardless of changes in currency value before applying the tax base calculation exception for maritime companies)[n]

{1}(#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338))(#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상운송이 아닌 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338))(#3 When a corporation that is eligible for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under Article 104-10 of the s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has accumulated tax-deferred reserves that remain within the company due to the fixed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that are not repatriated and do not leave the company regardless of changes in currency value before applying the tax base calculation exception, tax adjustments are made only for matters related to income other than maritime income, as specified in the same Article and paragraph. (Written Opinion-2022-Legal Corporation-0338).){e113<n>}

* + 1. [128](#1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3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provisions for functional currency (which is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adoption companies and overseas branches)[n]
       1. [129](#1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3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provisions for functional currency (which is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adoption companies)[n]
          1. [130](#1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규정)(#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규정)(#3 Regulations on the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provisions for functional currency (which is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adoption companies)[n]

{1}(#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법법§53의2의 각 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법§53의2).)(#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법법§53의2의 각 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법§53의2).)(#3 For domestic corporations that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by adopting a functional currency, which is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one of the methods specified in Article 53-2 of the Corporate Tax Act can be selected for tax base calculation (Article 53-2 of the Corporate Tax Act).){e132<이때>,e133<n>}

* + - * 1. [132](#1 같은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의 경우 적용방법)(#2 같은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의 경우 적용방법)(#3 Application method for affiliated corporations within the same consolidated group)[n]

{1}(#1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함.)(#2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함.)(#3 Affiliated corporations belonging to the same consolidated group must declare and apply the sam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e130<n>}

* + - * 1. [133](#1 법인세법§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의 적용시기)(#2 법인세법§53조의2(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의 적용시기)(#3 When to apply Article 53-2 of the Corporate Tax Act (Special tax base calculation exception for corporations adoptinga functional currency))[n]

{1}(#1 법인세법§53조의2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1 단서 및 §11).)(#2 법인세법§53조의2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1 단서 및 §11).)(#3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2 of the Corporate Tax Act apply from the fiscal year beginning after December 30, 2010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1 proviso and Article 11).){e130<n>}

* + - * 1. [134](#1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2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3 Choice of tax base calculation method)[n]

[135](#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1)))(#2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1)))(#3 Method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when the functional currency is not adopted except for the Korean Won (Article 53-2(1)(1) of the Corporate Tax Act))[n]

{1}(#1 법인세법§53의2①(1) 규정에서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란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의미로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합니다.(법령§91의3①))(#2 법인세법§53의2①(1) 규정에서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란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의미로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합니다.(법령§91의3①))(#3 In the context of Article 53-2(1)(1)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term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when the functional currency is not adopted" means that the item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amounts for each fiscal yearwhen converted to the Korean won are determined based on the Korean won amounts that should be prepared when converted from the foreign currency for fiscal years in which the functional currency is not adopted (Article 91-3(1)).){e130<n>,r136<n>,r141<n>}

[136](#1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금액으로 바꾸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3 Method for converting the tax base calculated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 into Korean won (Article 53-2(1)(2) of the Corporate Tax Act))[n]

[137](#1 기능통화로 과세표준 계산 후 원화로 환산)(#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과세표준 계산 후 원화로 환산)(#3 Conversion of the tax base calculated based o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into Korean won after calculating the tax base)[n]

{1}(#1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익금 및 손금, 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법령§91의3②))(#2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익금 및 손금, 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법령§91의3②))(#3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Tax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profits and losses, deficit, non-taxable income, and income deduction amounts shall be expressed in functional currency, and the tax base shall be calculated. Afterward, they shall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using the applicable exchange rate (Law §91-3(2)).){r135<n>,e138<n>,e140<n>,r141<n>}

[138](#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3 The exchange rate declared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or the average exchange rate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may be applied)[n]

[139](#1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법령§91의3③))(#2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법령§91의3③))(#3 In cases where there are reasons prescribed by law, the exchange rate declared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or the average exchange rate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may be applied (Article 91-3(3)))[n]

{1}(#1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91의3③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함)(#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91의3③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함)(#3 Corporations applying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that converts financial statement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into Korean won apply the exchange rate declared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or the average exchange rate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3(3) of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 r135<n>,e137<n>,e140<n>,r141<n>}

[140](#1 법인세법시행령§91의3③ 각 호 규정)(#2 법인세법시행령§91의3③ 각 호 규정)(#3 Provisions of Article 91-3(3) of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T, e137<n>,e138<n>]

{1}(#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3 =When converting the tax base express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into Korean won){n}

{2}(#1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 한도 금액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3 =When converting entertainment expenses, which are amounts spent in connection with business activities, into the functional currency){n}

{3}(#1 =법법§57 및 §57조의2, 조특법§10, §24, §25의6, §94 및 §104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2 =법법§57 및 §57조의2, 조특법§10, §24, §25의6, §94 및 §104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3 =When applying the provisions of Corporate Tax Law Article 57, Article 57-2,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10, Article 24, Article 25-6, Article 94, and Article 104-5, the tax deduction amount is calcul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and then converted into Korean Won){n}

[141](#1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2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3 The items in the balance sheet are presented at the year-end exchange rate, while the items in the income statement are accounted for using the exchange rate applicable on the transaction date (Article 53-2(1)(3) of the Corporate Tax Act))[n]

[142](#1 법인세법§53의2①(3) 규정의 내용)(#2 법인세법§53의2①(3) 규정의 내용)(#3 Contents of Article 53-2(1)(3) of the Corporate Tax Act)[n]

{1}(#1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2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3 Method for converting financial statement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into Korean won, when the items in the balance sheet are presented at the year-end exchange rate, and the items in the income statement are accounted for using the exchange rate applicable on the transaction date (Article 53-2(1)(3) of the Corporate Tax Act).){r135<n>,r136<n>,e143<n>}

[143](#1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법인세법시행령§91의3⑥))(#2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법인세법시행령§91의3⑥))(#3 Application of the average exchange rate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Article 91-3(6) of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n]

{1}(#1 법인세법§53의2①(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현재가치 할인차금상당액,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이자 및 할인액, 보험료상당액등,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임대료상당액, 사채할인발행 차금은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에 의함.)(#2 법인세법§53의2①(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현재가치 할인차금상당액,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이자 및 할인액, 보험료상당액등,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임대료상당액, 사채할인발행 차금(사채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했을 때 사채의 발행가와 액면가 사이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에 의함.)(#3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53-2(1)(3), the term "item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es depreciation, retirement benefit provision,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llowance for bad debts, amortization of discount on bonds, gains or losses from construction contracts, interest and discount amounts, insurance premium equivalent amounts, interest and discount amounts, dividend income, lease equivalent amounts, and bond discount issuance procee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ssuance price of bonds and their face value when bonds are issued below their face value). These items are based on the average exchange rate for the relevant fiscal year.){e142<n>}

[144](#1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법인세법시행령§91의3⑦))(#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법인세법시행령§91의3⑦))(#3 Determine the amount to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which should be express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 Article 91-3(7)))[n]

{1}(#1 법인세법§53의2①(3)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함),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의 손금 계상액 및 손금 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합니다.)(#2 법인세법§53의2①(3)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사업주가 급여의 일정비율 등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적립금액과 운용수익의 합계금액에 의해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의 손금 계상액 및 손금 산입한도를 각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합니다.)(#3 When apply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tax base as per Corporate Tax Act Article 53-2(1)(3), depreciation, retirement benefit premiums (the amount accumulated by the employer according to certain rules based on a certain percentage of wages and the sum of investment earnings used to determine the level of retirement benefits for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lans, etc.), retirement benefit provision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nd allowance for non-performing liabilities, as well as the limit for including such losses, shall be express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to determine the amount of losses to be included.){e142<n>}

* + - * 1. [145](#1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2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3 Application and change of tax base calculation method)[n]

[146](#1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절차)(#2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절차)(#3 Application and procedure for tax base calculation method)[n]

{1}(#1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과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표준계산 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과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표준계산 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Corporations intending to apply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and then convert it into Korean Won must submit a tax base calculation method declaration along with their corporate income tax base declaration for the initial fiscal year of applying this method.){r147<n>}

[147](#1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2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3 Change of tax base calculation method)[n]

[148](#1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의 내용)(#2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의 내용)(#3 Contents of the change in tax base calculation method)[n]

{1}(#1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과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소정 사유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법§53의2② 및 법령§91의2②).)(#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과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소정 사유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법§53의2② 및 법령§91의2②).)(#3 Corporations planning to apply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and then convert it into Korean Won cannot change their tax base calculation method except for cases specified by law (Article 53-2(2) and Article 91-2(2)).){e146<n>,e149<n>,e154<n>,e155<n>}

[149](#1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법령§91의2②))(#2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법령§91의2②))(#3 Cases wher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can be changed (Article 91-2(2)))[n]

[150](#1 기능통화의 변경)(#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의 변경)(#3 Change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n]

{1}(#1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3 Changing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e148<n>}

[151](#1 합병(분할합병 포함))(#2 합병(분할합병 포함))(#3 Merger (including merger after division))[n]

{1}(#1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2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3 When corporations with different tax base calculation methods merge (including merger after division)){ e148<n>}

[152](#1 사업의 인수)(#2 사업의 인수)(#3 Acquisition of business)[n]

{1}(#1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받은 경우)(#3 When a corporation takes over the business of another entity with a different tax base calculation method){ e148<n>}

[153](#1 내국법인과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다른 경우)(#2 내국법인과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다른 경우)(#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and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of its consolidated group are different)[n]

{1}(#1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해당 연결 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 표준계산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2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인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해당 연결 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 표준계산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is initially subject to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method as a part of an economically or substantively combined corporate group, has a tax base calculation method that differs from that of the consolidated group (only applicable when changing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to that of the consolidated group)){ e148<n>}

[154](#1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 절차)(#2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 절차)(#3 Procedure for changing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n]

{1}(#1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When changing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corporations must submit a tax base calculation method change request by the fiscal year-end for which they intend to apply the changed method.){e148<n>}

[155](#1 승인여부의 통지)(#2 승인여부의 통지)(#3 Notification of approval)[n]

{1}(#1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승인받지 않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2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승인받지 않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3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ll notify the corporation of the approval or disapproval within one month from the end of the fiscal year. If a corporation changes its tax base calculation method without approval, it will calculate it according to the previous method.){e148<n>,e154<n>}

* + - * 1. [156](#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및 환입(법인세법§53의2③(3)))(#2 국고 보조금이나 공사 부담금 또는 보험 차익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 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시상각충당금과 국고 보조금, 공사 부담금, 보험 차익으로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 이외의 자산을 손금 산입할 때를 대비하여 설정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및 환입)(#3 Establishment and reversal of temporary amortization reserve for fixed assets acquired using government grants, construction contributions, or insurance gains, and establishment of compression reserve for assets other than amortization assets acquired using government grants, construction contributions, or insurance gains)[n]

[157](#1 기능통화 변경 시 규정)(#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변경 시 규정)(#3 Regulations for changing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main economic environment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n]

{1}(#1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과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53의2③의 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2))과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환율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법인세법§53의2①(3))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53의2③의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서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3 When a corporation that has applied the calculation method for tax base as per Corporate Tax Act Article 53-2(1)(2) and has reported the method in which tax base is calculated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express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and then converted into Korean won, changes its functional currency, it shall include in income, for each individual asset or liability, the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rrying amount of that asset or liability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year of the change, expressed at the exchange rate on the first day of that year, and the carrying amount of that asset or liability in the functional currency used immediately before the change, expressed at the exchange rate on the last day of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change, applying the exchange rate on the acquisition or incurrence date of that asset or liability, and shall recognize such amount as deferred income and allocate it as a provision for future depreciation or future decommissioning costs.){e158<n>}

[158](#1 법인세법§53의2③ 각 호의 규정)(#2 법인세법§53의2③ 각 호의 규정)(#3 Provisions of Article 53-2(3) of the Corporate Tax Act)[n]

[159](#1 법인세법§53의2③ 1호)(#2 법인세법§53의2③ 1호)(#3 Provisions of Article 53-2(3)(1) of the Corporate Tax Act)[n]

{1}(#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가액)(#2 변경 후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가액)(#3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as of the beginning of the relevant fiscal year, denominated in the changed functional currency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currency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e160<n>,e157<이 때>}

[160](#1 법인세법§53의2③ 2호 및 법인세법§91의3⑤)(#2 법인세법§53의2③ 2호 및 법인세법§91의3⑤)(#3 Corporate Tax Act Article 53-2③(2), and Corporate Tax Act Article 91-3⑤)[n]

{1}(#1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법인세법§53의2③(2)). 이때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합니다.(법인세법§91의3⑤))(#2 변경 전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 표시한 금액(법인세법§53의2③(2)). 이때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합니다.(법인세법§91의3⑤))(#3 The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as of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fiscal year, denominated in the former functional currency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currency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 adjusted to the changed functional currency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currency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 using the exchange rate on the acquisition date or the occurrence date of the assets or liabilities. The exchange rate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evailing market rate or other applicable rates as of the relevant date, as specified in Corporate Tax Act Article 91-3(5).){e159<n>,e157<이 때>}

* + - * 1. [161](#1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관련 예규)(#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관련 예규)(#3 Established rule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for entities adopting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y conduct)[n]

[162](#1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3 In cases where the exchange rate for the functional currency is not officially published, the method for convert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overseas operations into Korean Won) [n]

{1}(#1 「법인세법」 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변동환율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인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 해석법인-2452, 2018.01.18.))(#2 「법인세법」 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변동환율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인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 해석법인-2452, 2018.01.18.))(#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applying the method specified in Article 53-3(1)(3) of the Corporate Tax Act, convert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its overseas business branch, which are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it operates, into Korean won, and if the official exchange rat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is not specified for the functional currency, then, if the central bank of that country has announced a fluctuating exchange rate that corresponds to the relevant transaction or balanc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overseas business branch on the measurement date, this exchange rate may be applied objectively and reasonably to conver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overseas business branch into Korean won (Written Opinion-2017-Tax Interpretation Corporation-2452, January 18, 2018).) {e141<n>}

[164](#1 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추인 여부)(#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세무상 유보금액 추인 여부)(#3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foreign exchange translation gains and losses upon the introduction of the functional currency are recognized outside and retained within the entity as tax-reserved earnings)[n]

{1}(#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함(재법인-678, 2012.7.19.))(#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함(재법인-678, 2012.7.19.))(#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following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dopts a currency other than the Korean won as the functional currency to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and, for the first time, applies the method to calculate tax base by converting it into Korean won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express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any tax-reserved balances related to monetary assets and liabilitie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up to the end of the previous year, will not be carried forward to the initial tax year in which the special calculation method is applied, and will be extinguished (Corporation-678, July 19, 2012).){e136<n>}

* + - * 1. [165](#1 $(기능통화 세액계산 사례))(#2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세액계산 사례))(#3 $(Calculation of tax for corporations using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y operate))[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 1. [166](#1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3 Calculation of the tax base for overseas business branches)[n]
         1. [167](#1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3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of overseas business branches)[n]

[168](#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2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3 Declaration to the tax office)[n]

{1}(#1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53의3①의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2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53의3①의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3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the overseas business branch of a domestic corporation follows one of the methods specified in Article 53-3(1)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is reported to the head of the relevant tax office.){e170<n>}

[169](#1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개정규정의 적용)(#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개정규정의 적용)(#3 Application of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overseas business branches)[n]

{1}(#1 개정규정은 ’10.12.30.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세법(제10423호)부칙 제1조단서 및 제12조))(#2 개정규정은 ’10.12.30.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세법(제10423호)부칙 제1조단서 및 제12조))(#3 The amended provisions apply from the fiscal year that includes December 30, 2010, for corporations apply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t that time and from the fiscal year beginning after January 1, 2011, for other corporations (Corporate Tax Act (No. 10423)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1 proviso, and Article 12).){e170<n>}

* + - * 1. [170](#1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세부규정(법인세법§53의3①,법인세법시행령§91의3))(#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세부규정(법인세법§53의3①,법인세법시행령§91의3))(#3 Details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of overseas business branches and the detailed regulations (Corporate Tax Act Article 53-3(1),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 Article 91-3))[n]

[171](#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는 방법)(#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다시 작성하는 방법)(#3 The method of re-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which must be prepared if a foreign business establishment has not adopted a functional currency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conducted) other than the Korean won)[n]

[172](#1 과세표준 계산방법 의미(법인세법§53의3①(1)))(#2 과세표준 계산방법 의미(법인세법§53의3①(1)))(#3 Meaning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Corporate Tax Act Article 53-3(1)(1)))[n]

{1}(#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다시 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3 When financial statements of an overseas business branch are not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the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al currency must be rewritten and then combined wit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head office to calculate the tax base using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s a basis.){e173<n>}

[173](#1 과세표준계산방법 세부규정(법인세법시행령§91의3①))(#2 과세표준계산방법 세부규정(법인세법시행령§91의3①))(#3 Details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 Article 91-3(1)))[n]

{1}(#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합니다.)(#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다시 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합니다.)(#3 When financial statements of an overseas business branch are not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items recognized as losses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s in the Korean won financial statements when calculating the income for each fiscal year only when recognized as losses.){e172<n>}

[174](#1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3 Method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overseas business branches)[n]

[175](#1 과세표준 계산방법 의미(법인세법§53의3①(2)))(#2 과세표준 계산방법 의미(법인세법§53의3①(2)))(#3 Meaning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Corporate Tax Act Article 53-3(1)(2)))[n]

{1}(#1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3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by converting it into Korean won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overseas business branch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and then combining it with the tax base of the head office){e176<n>}

[176](#1 과세표준계산방법 세부규정(법인세법시행령§91의3②③))(#2 과세표준계산방법 세부규정(법인세법시행령§91의3②③))(#3 Detailed regulations on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 Article 91-3(2)(3)))[n]

{1}(#1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 또는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2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 또는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3 The method for converting income and losses of overseas business branches, as required by the Corporate Tax Act and other laws, into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overseas business branch (the currency of the primary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and then converting it into Korean won. The conversion is done using the exchange rate declared to the tax office on the current date of the fiscal year-end or the average exchange rate for items denominated in the functional currency of the overseas business branch.){e175<n>}

[177](#1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2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3 The method of convert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 foreign business establishment into Korean won involves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for the balance sheet items and the exchange rate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or the items in the income statement)[n]

[178](#1 과세표준 계산방법 의미(법인세법§53의3①(3)))(#2 과세표준 계산방법 의미(법인세법§53의3①(3)))(#3 Meaning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Corporate Tax Act Article 53-3(1)(3)))[n]

{1}(#1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2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3 Conversion of overseas business branch financial statements, where the balance sheet items are converted into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fiscal year-end, and the income statement items are converted using the exchange rate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n combining them wit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head office to calculate the tax base.){e179<n>}

[179](#1 과세표준계산방법 세부규정(법인세법시행령§91의5⑦))(#2 과세표준계산방법 세부규정(법인세법시행령§91의5⑦))(#3 Details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ax base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 Article 91-3(2)(3)))[n]

{1}(#1 법인세법 시행령§91의3⑥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시행령§91의3⑥에 해당하는 항목 외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평균환율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합니다.)(#2 법인세법 시행령§91의3⑥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시행령§91의3⑥에 해당하는 항목 외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평균환율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합니다.)(#3 For items corresponding to Article 91-3(6) of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Decree, the average exchange rate shall be applied, and for items other than those corresponding to Article 91-3(6), the exchange rate declared to the tax office on the current date of the transaction of the relevant items or the average exchange rate shall be applied.){e178<n>}

* + - 1. [180](#1 $(기능통화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2 $(기능통화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3 $(Functional currency and overseas business tax base calculation method report (change request)))[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129<n>,e166<n>}

<boe>